

내부통제기준 주요 개정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제 4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9 조에 따라 2021. 09. 25 부로 개정된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 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이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2. 금융상품 각 단계(개발, 판매, 사후관리)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3.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관계부서 간 피드백 업무 총괄
5.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6.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② 준법감시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관련 업무절차

내부통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 ①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고객영업본부는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고객영업본부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업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수 이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 ① 판매임직원등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내부통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1. 제 1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2.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전문성과 숙련도가 낮은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3. 기타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이상으로 발생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 ③ 회사는 판매임직원등이 제 2 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판매임직원등에게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매임직원등이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① 회사는 판매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이하 “성과보상체계”라 한다)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성과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가 지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